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2-12호

「상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조례안 예고

1. 조례명

가. 상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나. 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2. 제정이유

가. 상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상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지원 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나. 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상주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세부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문	내용	조문	내용
제1조	목적	제8조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
제2조	정의	제9조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제4조	의장의 책무	제11조	보복행위 및 허위신고
제5조	대책 수립 및 시행	제12조	협조자의 보호
제6조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13조	실태조사 실시
제7조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제14조	직장교육 의무화

나. 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문	내용	조문	내용
제1조	목적	제7조	지원 기준 및 절차
제2조	정의	제8조	지원방법
제3조	기본원칙	제9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4조	의장의 책무	제10조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	지원범위	제11조	운영규정
제6조	지원의 제한 등	-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9월 15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참조: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개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ywnine@korea.kr

2) 주 소: (우37183) 상주시 중앙로 111, 상주시의회

3) 팩 스: 054-535-9854 (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37-78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https://www.sangjucouncil.go.kr> → 의회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